

[별표]

세부평가 기준표

1. 점수 산정 방식

가.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.

나.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.

2.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

가.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

참작사항		부과수준		상(3점)	중(2점)	하(1점)
		비중				
위반행위 내용		0.5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저한 가격상승·산출량 감소·품질 저하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• 현저한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자(잠재적 사업자포함) 배제효과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•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• 경쟁제한효과만 있거나 효율성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당한 가격상승·산출량 감소·품질 저하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• 상당한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자(잠재적 사업자포함) 배제효과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•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의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• 경쟁제한효과에 비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현저히 적은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위반행위 정도	부당이득 / 피해규모	0.2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반행위의 지속기간, 시장의 구조,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, 거래단계, 대체의 용이성, 가격인상분의 절대·상대적인 수준, 이익률의 절대·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다른 사업자·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반행위의 지속기간, 시장의 구조,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, 거래단계, 대체의 용이성, 가격인상분의 절대·상대적인 수준, 이익률의 절대·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다른 사업자·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	시장점유율	0.1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% 이상인 경우 또는 1위 사업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% 이상 50% 미만이고, 관련 시장내 상위 3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% 이상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	관련 매출액	0.1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련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련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인 경우</li> </ul>
	지역적 범위	0.1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또는 그 이상의 시장인 경우로서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이나, 위반행위 효과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경우</li> </ul>

비고: 관련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의 비중치(0.1)는 부당이득/피해규모의 비중치에 합산(0.3)하여 점수를 산정한다.

나.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

참작사항		부과수준		상(3점)	중(2점)	하(1점)
		비중				
위반 행위 내용	유예 기간을 부여받지 않은 행위	0.5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행위의 의도·목적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, 경제력집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한 법의 목적·근간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행위의 의도·목적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, 경제력집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한 법의 목적·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	유예 기간을 부여받은 행위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규상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상태를 50% 미만 해소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규상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유예기간중 위반상태를 50% 이상 70% 미만 해소하였거나,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50% 미만 해소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규상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유예기간중 위반상태를 70% 이상 해소하였거나,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상태를 50% 이상 70% 미만 해소한 경우</li> </ul>
위반 행위 정도	위반액	0.3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반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li> </ul>
	위반 기간	0.2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년 이상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6개월 미만인 경우</li> </ul>

다. 부당한 공동행위(사업자)

참작사항		부과수준		상(3점)	중(2점)	하(1점)
		비중				
위반 행위 내용	경쟁 제한성	0.2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제 1, 2, 3, 4, 8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제 1, 2, 3, 4, 8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담합의 동기·목적, 관련시장의 특성(시장집중도, 진입의 용이성, 입찰방식, 유통구조 등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	이행 정도	0.2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이행 감시·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감시·제재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이행 감시·제재 수단이 존재하지만 실제 감시·제재하지 않은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이행 감시·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위반 행위 정도	관련 시장 점유율	0.1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% 이상인 경우</li> <li>제8호의 경우 입찰참가자 대비 공동행위에 가담한 입찰참가자의 비율(단, 여러 입찰이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룰 경우 각 입찰 별 비율의 산술평균)이 90% 이상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30% 이상 50% 미만인 경우</li> <li>제8호의 경우 입찰참가자 대비 공동행위에 가담한 입찰참가자의 비율(단, 여러 입찰이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룰 경우 각 입찰 별 비율의 산술평균)이 75% 이상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30% 미만인 경우</li> <li>제8호의 경우 입찰참가자 대비 공동행위에 가담한 입찰참가자의 비율(단, 여러 입찰이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룰 경우 각 입찰 별 비율의 평균)이 75% 미만인 경우</li> </ul>
	관련 매출액	0.2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</li> <li>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1000억원 이상, 물품구매·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경우</li> <li>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4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, 물품구매·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</li> <li>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400억원 미만, 물품구매·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</li> </ul>
	부당 이득 / 피해 규모	0.2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행위의 지속기간, 시장의 구조,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, 거래단계, 대체의 용이성, 가격인상분(입찰에서의 낙찰률)의 절대·상대적인 수준, 이익률의 절대·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 상대방·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행위의 지속기간, 시장의 구조,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, 거래단계, 대체의 용이성, 가격인상분(입찰에서의 낙찰률)의 절대·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 상대방·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	지역적 범위 (제8호 의 경우 입찰 특성)	0.1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경우</li> <li>제8호의 경우 발주처(다만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다른 경우 수요기관을 의미한다)가 중앙정부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도 이내에 미치는 경우</li> <li>제8호의 경우 발주처(다만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다른 경우 수요기관을 의미한다)가 지방자치단체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(국·공립 및 사립 학교)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특별시·광역시·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</li> <li>제8호의 경우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</li> </ul>

비고: 관련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의 비중치(0.2)는 부당이득/피해규모의 비중치에 0.1를 합산(0.3)하고 관련 시장점유율의 비중치에 0.1를 합산(0.2)하여 점수를 산정한다.

라.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

참작사항	부과수준		상(3점)	중(2점)	하(1점)
	비중				
위 반 행 위 내 용	범위반 유형	0.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중 법 제 40조 제1항 제1, 2, 3, 4, 8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</li> <li>•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제 4호 중 제45조제1항제1호 (부당거래거절행위)의 공동의 거래거절을 하게 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중 법 제 40조 제1항 제1, 2, 3, 4, 8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담합의 동기·목적, 관련 시장의 특성(시장집중도, 진입의 용이성, 입찰 방식, 유통구조 등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</li> <li>•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제2호의 사업자 수 제한 행위</li> <li>•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제 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사업활동 제한 행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</li> </ul>
	이행 정도	0.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자단체가 이행 감시·제재수단을 활용하여 실제 감시·제제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반행위 이행 감시·제재 수단이 존재하지만 실제 감시·제재하지는 않은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반행위 이행 감시·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위 반 행 위 정 도	사업자 단체의 대표성	0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50%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30% 이상 50% 미만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30% 미만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</li> </ul>
	단체 또는 사업자 주도	0.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업자단체) 사업자단체의 적극적 주도하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</li> <li>• (사업자) 구성사업자들이 요구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업자단체)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</li> <li>• (사업자) 사업자단체의 적극적 주도하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참여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	부당 이득 / 피해 규모	0.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반행위의 지속기간, 시장의 구조,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, 거래단계, 대체의 용이성, 가격인상분(입찰에서의 낙찰률)의 절대·상대적인 수준, 이익률의 절대·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방·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반행위의 지속기간, 시장의 구조,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, 거래단계, 대체의 용이성, 가격인상분(입찰에서의 낙찰률)의 절대·상대적인 수준, 이익률의 절대·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·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지역적	0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이</li> </ul>	

	범위	이 전국에 미치는 경우	2개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도 이내에 미치는 경우	1개의 특별시·광역시·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
--	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다.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

참작사항		부과수준			
		비중	상(3점)	중(2점)	하(1점)
위반행위 내용		0.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행위의 의도·목적,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,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(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)이 현저한 경우</li> <li>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서비스가 현저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행위의 의도·목적,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,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(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)이 상당한 경우</li> <li>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서비스가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위반행위 정도	부당이득 / 피해 규모	0.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행위의 유형, 관련시장 및 거래의 성격, 거래기간, 거래당사자간 관계, 거래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방 등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행위의 유형, 관련시장 및 거래의 성격, 거래기간, 거래당사자간 관계, 거래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	평균 매출액	0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원 이상 1천5백억원 미만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원 미만인 경우</li> </ul>
	관련 매출액	0.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 등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 등이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 등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</li> </ul>
	지역적 범위	0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도 이내에 미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특별시·광역시·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</li> </ul>

비고: 관련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의 비중치(0.2)는 부당이득/피해규모의 비중치에 0.1를 합산(0.3)하고 평균매출액의 비중치에 0.1를 합산(0.2)하여 점수를 산정한다.

바. 부당한 지원행위

참작사항		부과수준		상(3점)	중(2점)	하(1점)
		비중				
위반 행위 내용 및 정도	지원효과	0.4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</li> <li>· 중소기업, 경쟁사업자 등에 피해가 나타나거나 나타날 우려가 현저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 집중 또는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</li> <li>· 중소기업, 경쟁사업자 등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우려가 상당한 경우</li> </ul>	·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	지원의도	0.2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주체의 지원의도가 명확한 경우</li> <li>· 지원객체가 지원주체의 특수관계인인 경우</li> </ul>	· 지원주체의 지원의도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	·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	지원규모	0.4		·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	·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상당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	·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
사.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

참작사항		부과수준		상(3점)	중(2점)	하(1점)
		비중				
위반행위 내용		0.5		· 행위의 의도·목적,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,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	· 행위의 의도·목적,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,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	·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위반 행위 정도	위반액	0.3		· 위반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	·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	· 위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	특수 관계인 지분 보유 비율	0.2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</li> <li>·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</li> </ul>	·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0% 이상 50% 미만인 경우	·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0% 미만인 경우

아. 보복조치 금지행위

참작사항		부과수준		상(3점)	중(2점)	하(1점)
		비중				
위반행위 내용		0.4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행위의 의도·목적, 보복조치 유형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, 관련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복조치의 심각성이 현저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행위의 의도·목적, 보복조치 유형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, 관련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복조치의 심각성이 상당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위반행위 정도	피해 규모	0.4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복조치의 상대방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복조치의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	평균 매출액	0.2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원 이상 1천 5백억원 미만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원 미만인 경우</li> </ul>